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근로관계 권리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북도 근로관계 권리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42
----------	-----

2021. 1. 28.(목)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1년 1월 14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1월 14일

라. 상정일자 : 2021년 1월 20일

- 제3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경제통상국장 신형근)

가. 제안이유

-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 및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신축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충청북도 근로관계 권리보호센터 운영
- 위 치 :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내
(충북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산12-2)
- 규 모 : 부지 3,305㎡, 건물연면적 2,565㎡ / 지하1층, 지상4층

- 위탁기간 : 2021. 2. ~ 2023. 12.
- 위탁기관 : 노동 상담 전문 기관·단체 위탁 운영
- 수탁자 선정 방법 : 공개모집
- 사업비 : 50,000천원(도비 100%, 민간위탁금) * 연도별 변동가능
- 위탁 주요사무 : 근로자 권익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및 노동법률 상담
(부당해고, 산업재해, 임금체불, 노동조합 운영, 근로기준법 일반 등)

3. 검토의견 요지(우경수 수석전문위원)

가. 제출배경

- 충청북도 근로관계 권리보호센터는 「충청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 코로나19 피해 및 근로 사각지대에 처한 도내 임금근로자와 소규모 영세사업장 사업주에 대한 근로관계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노동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음.

나. 주요내용 및 의견

- 충청북도 근로관계 권리보호센터는 「충청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및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이 가능한 사무로, 충청북도 근로관계 권리보호센터의 기능을 살펴보면,
 - 근로자 권익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및 노동법률 상담을 주요내용으로 방문상담, 전화상담, 현지출장상담 방법을 통하여
 - ① (부당해고) 부당해고 대응방안, 입증자료 확보방법 등
 - ② (산업재해) 산재 신청 및 구제 상담
 - ③ (임금체불) 체당금 산출, 소액체당금 신청 안내

- ④ (노동조합운영) 노조 설립·운영·해산 상담 및 임단협 검토
- ⑤ (근로기준법 일반) 근로계약서·취업규칙 검토, 수당 산출 등
- ⑥ (사업주 노무컨설팅) 중소기업 인사·노무 애로사항 해소 등의 상담 기능 등을 담당 할 예정임.

- 충청북도 근로관계 권리보호센터 운영 위탁은 「충청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에 근거한 것이며,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4조에도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충청북도 근로관계 권리보호센터의 기능 측면에서 볼 때 이에 해당 한다고 판단됨.
- 따라서, 충청북도 근로관계 권리보호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및 근로 사각지대에 처한 임금근로자와 소규모 영세 사업장 사업주의 권익 보장을 위해 노동 법률상담 및 구제 등의 업무를 추진해야 하므로, 官의 직영보다는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도내 소재 노동 상담 전문 기관·단체에 위탁 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함.
- 다만, 노동법과 관련된 근로자들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센터인 만큼 수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부실 운영 등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관련 법령

※ 「충청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제15조(지원대상)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충청북도지역본부
2.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4. 노사관련 도 단위 기관·단체, 충청북도내 외국인근로자 기관·단체

제16조(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와 조합원의 교육사업
2.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연구사업
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 사업
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 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와의 교류사업
5.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연구사업
6.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 사업
7. 교섭모델 개발 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
8. 산업재해예방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9. 노사화합 지원 및 근로자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10.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11.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축제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12.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 역량 강화 및 상담·교육 홍보 사업 등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8.>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구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되는 사무
4. 그 밖에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되는 사무
4. 그 밖에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사무
5. 삭제 <2020. 12. 18.>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 론 요 지 : “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근로관계 권리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 642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근로관계 권리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1년 1월 14일

충청북도 근로관계 권리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642
----------	-----

제출연월일 : 2021년 1월 14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코로나19 피해 및 근로 사각지대에 처한 도내 임금근로자 및 소규모 영세사업장 사업주에 대한 근로관계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노동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한
- “충청북도 근로관계 권리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충청북도 근로관계 권리보호센터 운영
-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코로나19로 인한 임금근로자 고용안전망 약화 우려 및 소규모 영세 사업장 사업주에 대한 근로관계 지원 필요
- 위탁사무 내용 : 근로자 권익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및 노동법률 상담 (부당해고, 산업재해, 임금체불, 노동조합 운영, 근로기준법 일반 등)
- 위탁시설 개요 : 해당 없음
- 위탁기간 : 2021. 2. ~ 2023. 12.
- 수탁자 선정 방식 : 공개모집(도내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50,000천원(도비 100%) * 연도별 변동가능
 - 노동상담 전문가 인건비 : 3,500천원 × 12월 = 42,000천원
 - 출장 상담 여비 : 100천원 × 12월 = 1,200천원
 - 노무·법률 자문료 : 500천원 × 12월 = 6,000천원
 - 기타운영비(사무용품 등) : 800천원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붙임
- 민간위탁 성과평가 보고서 : 해당 없음
-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 관계법령 붙임

3. 관계법령 발췌

- 「충청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제15조 및 제16조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충청북도 근로관계 권리보호센터 설치 운영 계획

I. 추진근거

- 「충청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제16조(지원대상 사업)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II. 사업개요

- 사업명 : 충청북도 근로관계 권리보호센터(노동상담소) 운영
- 사업위치 :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내
- 사업기간 : 2021. 2. ~ 계속
- 운영방법 : 노동 상담 전문 기관·단체 위탁운영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사업비 : 50,000천원(2021년 도비, 민간위탁금)

< 산출기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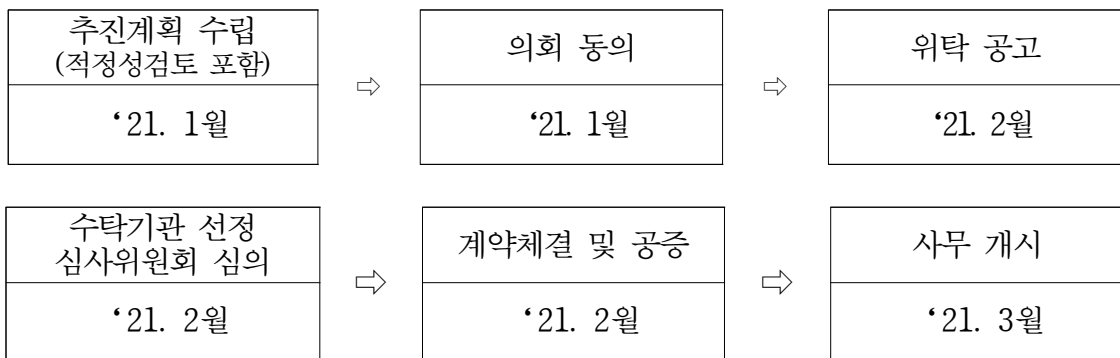
- 노동상담 전문가 인건비 : 3,500천원 × 12월 = 42,000천원
※ 상담자격 : 노동 상담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출장 상담 여비 : 100천원 × 12월 = 1,200천원
- 노무·법률 자문료 : 500천원 × 12월 = 6,000천원
- 기타운영비(사무용품 등) : 800천원

- 사업내용 : 근로자 권익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및 노동법률상담
 - 상담방법 : 방문상담, 전화상담, 현지출장 상담 등
 - 상담내용(예시)
 - ① (부당해고) 부당해고 대응방안, 입증자료 확보방법 등
 - ② (산업재해) 산재 신청 및 구제 상담
 - ③ (임금체불) 체당금 산출, 소액체당금 신청 안내

- ④ (노동조합운영) 노조 설립·운영·해산 상담 및 임단협 검토
- ⑤ (근로기준법 일반) 근로계약서·취업규칙 검토, 수당 산출 등
- ⑥ (사업주 노무컨설팅) 중소기업 인사·노무 애로사항 해소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① 수탁기관 선정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도 홈페이지 공고(7일) 후 사업계획서 접수,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결정(고득점자 선정)
- 선정기준 및 배점

심사항목	세부기준	배점
	계	10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운영 계획	40점
사업수행능력	사업추진 경력 및 성과, 사업운영 능력	30점
법인(단체)의 공신력	신뢰성, 사업수행 인력의 전문성	20점
예산운용 능력	예산책정의 합리성	10점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도내에 소재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단체
-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법인(단체)의 귀책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해지 되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진 이력이 있는 법인(단체)은 제외

○ 위탁조건

- 법령·조례·지침 등을 준수하고 협약내용 성실히 수행

②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심의대상 : 공개모집

○ 개최시기 : '21. 2월

- 구성인원 : 6 ~ 9명 이내 (관계 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 당연직 3(기획관리실장, 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기타(전문가) 위촉

- 심사항목 : 사업계획 적정성,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

○ 선정방법

- 신청법인(단체)의 사업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후 심사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사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70점 이상을 얻은
법인(단체) 중 최고득점의 법인(단체)을 수탁기관으로 선정

※ 심사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단체)과 위탁계약
체결 결렬 시 차순위 득점을 한 법인(단체)과 계약 체결

③ 계약체결 및 공증

○ 체결시기 : '21. 2월

○ 내 용 : 계약 체결 및 계약 내용 공증

IV. 향후계획

- 의회 동의 : '21. 1월중
- 위탁운영단체 공개모집 공고 : '21. 2월
- 선정심사위원 구성·위촉 : '21. 2월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21. 2월
- 위·수탁계약 체결 및 공증 : '21. 2월

민간위탁 전 적정성 검토결과

검토기준	검토결과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북도 근로관계 권리보호센터는 「충청북도 노사발전 지원 조례」 제16조 제3항에 의거,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 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사업임. ○ 코로나19 피해 및 근로 사각지대에 처한 근로자의 권리 침해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함. ○ 근로자 노동법률 상담은 전문성을 요하며,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무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임금근로자의 직업 안정 및 노동권 보장, 지역사회 경제 안정을 위해 공공성이 요구되며, 공공의 경우 잦은 인사이동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음.
③ 경제적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축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내에 운영하여 임대료 등 기타비용 없이 인력 충원으로 활용 가능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자격을 노동 상담 업무 종사 5년 이상으로 제한하여 노동 관련 현장경험이 축적된 민간의 전문지식,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성 도모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계획에 기반하여 사업 실적 및 자료 관리가 가능하며, DB 구축으로 통계자료 등에 활용하여 사업개선과 발전 도모 ○ 분기별 상담 실적 및 정형화된 상담일지를 통해 성과 측정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8조에 의거,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 가능

검토기준	검토결과
⑦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 NGO에서 실시하는 노동인권센터가 있으나 공공운영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짐.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자 피해 발생 상황 하 공공 서비스인 충북근로자종합복지관 내 근로관계 권리보호센터의 이용 증가 예상
⇒ 충청북도 근로관계 권리보호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및 근로 사각지대에 처한 임금근로자와 소규모 영세 사업장 사업주의 권익 보장을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노동법률상담 및 구제 등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함.	

관계법령

□ 충청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제15조(지원대상)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충청북도지역본부
2.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4. 노사관련 도 단위 기관·단체, 충청북도내 외국인근로자 기관·단체

제16조(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와 조합원의 교육사업
2.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연구사업
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 사업
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 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와의 교류사업
5.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연구사업
6.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 사업
7. 교섭모델 개발 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
8. 산업재해예방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9. 노사화합 지원 및 근로자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10.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11.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축제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12.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 역량 강화 및 상담·교육 홍보 사업 등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8.>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구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되는 사무
4. 그 밖에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사무
5. 삭제 <2020. 12. 18.>